## 조선충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1047호(號) 1930년(昭和 5) 7월 1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90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 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0(昭和 5)년 7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기사란(記事欄) 중(中)「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(指定運送取扱人)의 환급운임계산액(還給運賃計算額)에 가산(加算)함으로 함」을 「본(本) 운임(運賃)은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0조(條)제4호(號) 적용(適用) 상(上) 보통운임(普通運賃)으로 간주(看做)함」으로 개정(改正)함.